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5
----------	-----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연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은 보호 이후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게 되었음. 따라서 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각 호)
- 나.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 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 라. 피학대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보호를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와 운영,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동물학대자로 하여금 동물의 치료비를 징구할 수 있게 하는 안 등,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

- 서울시는 2019년 3월부터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유기동물응급치료센터는 중증의 유기동물에 대한 응급치료 및 유기동물 보호의 사각지대 시간(야간 등)에 대한 선제적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중증 유기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설립 한 바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의 근거를 광

의로 해석¹⁾하여 민간경상보조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동 조 례 개정안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유기동물 입양의 지원

- 개정안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유기동물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며 입양을 추진하고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대립하고 있음.
-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공간적인 한계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보호받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개별 동물의 복지가 침해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임.

1)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유기동물이 입양되지 않는 경우 동물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안락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반면 유기동물을 영원히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물의 생명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장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위하여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20일이 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임. 다만, 안락사에 있어서 인도적인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두 측면에서의 주장 모두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유기동물의 발생은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입양한 뒤 유기함으로서 나타난 것으로,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의 성숙을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일부 존재한다 할 것임.
-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물등록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책임을 증대시키고, 1회에 한하여 동물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시키고자 제안된 안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유기동물의 입양 시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하는 것인 바,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동물의 유기 또는 유실 시 (해당 동물을 찾을 수 있어) 소유주의 의무가 강화될 것임.

- 동물보험료 지원의 경우 입양시 1회 1년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S화재보험사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음. 유기동물 입양시 1두당 평균 20만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으며, 가입동물은 개(犬)로 한정하나 연령이나 질병력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동물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음. 이는 반려동물이 개인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삶의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인 바, 비반려인에 대한 상대적인 형평성이 고려된 정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관련 현황

- 2018년 기준 전국의 유기동물은 12만1천2백마리가 발생하였음. 이 중 주인에게 인도되는 비율은 13.1%이며, 분양이 29.5%, 안락사가 21.9% 및 자연사가 25.5%로 나타나고 있음.
- 동물의 유기사유 중 하나인 과도한 병원비 지출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사 또는 안락사가 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유기동물의 분양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 안락사 비율(26.8%)이 높게 나타나며 실제 유기되는 빈도 역시 고양이(28,115마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91,963마리)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표〉 동물 처리 현황(2018년, 전국)

축종	계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기타	보호중
개	91,963	15,315	27,384	1,531	15,570	24,627	32	827	6,677
		16.7%	29.8%	1.7%	16.9%	26.8%	0.0%	0.9%	7.3%
고양이	28,115	505	7,649	797	15,151	1,858	872	410	873
		1.8%	27.2%	2.8%	53.9%	6.6%	3.1%	1.5%	3.1%
기타	1,191	99	777	14	179	69	7	15	31
		8.3%	65.2%	1.2%	15.0%	5.8%	0.6%	1.3%	2.6%
계	121,269	15,919	35,810	2,342	30,900	26,554	911	1,252	7,581
		13.1%	29.5%	1.9%	25.5%	21.9%	0.8%	1.0%	6.3%

- 서울시의 경우 유기(실)동물의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분양율은 최저 27.4%에서 최고 32.8%를 나타내고 있음. 2012년을 기준으로 인도/반환비율은 상승한 바, 이 경우 동물등록제도의 제도적 성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동물 처리 현황(2018년, 서울시)

연도	계	구조 실적			조치내역				
		개	고양이	기타	인도/반환	분양/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2018	8,220 (100%)	5,368 (65.3%)	2,607 (31.7%)	245 (3.0%)	2,098	2,566	1,411	1,996	149 (방사19포함)
					25.5%	31.2%	17.2%	24.3%	1.8%
2017	8,630 (100%)	5,584 (64.7%)	2,758 (32.0%)	288 (3.3%)	2,114	2,606	1,512	2,228	170 (방사18포함)
					24.5%	30.2%	17.5%	25.8%	2.0%
2016	8,645 (100%)	5,872 (67.9%)	2,433 (28.1%)	340 (4.0%)	2,295	2,533	1,442	2,331	44 (방사15포함)
					26.5%	29.3%	16.7%	26.9%	0.6%
2015	8,902 (100%)	6,060 (68.1%)	2,541 (28.5%)	301 (3.4%)	2,256	2,517	1,277	2,832	20 (방사1 포함)
					25.4%	28.3%	14.3%	31.8%	0.2%
2014	9,551 (100%)	6,644 (69.6%)	2,616 (27.4%)	291 (3.0%)	2,217	2,757	1,370	3,207	-
					23.2%	28.9%	14.3%	33.6%	
2013	11,395 (100%)	7,765 (68.1%)	3,269 (28.7%)	361 (3.2%)	2,121	3,136	1,961	4,177	-
					18.6%	27.5%	17.2%	36.7%	
2012	13,556 (100%)	7,860 (58.0%)	5,350 (39.5%)	346 (2.5%)	1,863	4,442	3,370	3,666	215(방사)
					13.7%	32.8%	24.9%	27.0%	1.6%
2011	15,229 (100%)	8,523 (56.0%)	6,263 (41.1%)	443 (2.9%)	1,830	4,179	3,672	5,473	75(방사)
					12.0%	27.4%	24.1%	36.0%	0.5%
2010	18,624 (100%)	11,120 (59.7%)	7,092 (38.1%)	412 (2.2%)	1,973	5,449	10,873	329	-
					10.6%	29.3%	58.4%	1.7%	

- 개정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막고,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되었고, 이에 현황자료를 참고해 볼 때,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4 종합의견

-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동물유기 및 유실의 방지 그리고 동물응급치료센터의 설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살펴본 바 개정안이 담은 내용적인 측면과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5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김용연, 김화숙, 이병도,
김제리, 이광성, 문장길,
이영실, 최기찬, 오현정,
김정환, 김혜련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현행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은 보호 이후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게 되었음. 따라서 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울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각 호)
- 나.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 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 라. 피학대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치료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치료
3.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

② 이외에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
〈신설〉	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신설〉	4. 법 제41조에 또는 동물보호명
〈신설〉	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
〈신설〉	을 받은 사람
〈신설〉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
〈신설〉	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
〈신설〉	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
〈신설〉	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
〈신설〉	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신설〉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신설〉	사람
③ ~ ⑭ (생략)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신설〉	자
〈신설〉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신설〉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신설〉	경력이 있는 사람
③ ~ ⑭ (생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신설〉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
〈신설〉	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신설〉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
〈신설〉	급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신설〉	다.
〈신설〉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
〈신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u>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치료</u></p> <p>2. <u>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치료</u></p> <p>3. <u>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u></p> <p>4. <u>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u></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④ <u>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u>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1. <u>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u></p> <p>2. <u>동물등록비용</u></p>

현행	개정안
<p><u>제14조</u>、<u>제15조</u> (생략)</p> <p><u>제16조</u>(소요경비의 징수) 법 <u>제19조</u>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u>제17조</u> ~ <u>제24조</u> (생략)</p>	<p>3.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p> <p>② 이외에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u>제16조</u>、<u>제17조</u> (현행 <u>제14조</u> 및 <u>제15조</u>와 같음)</p> <p><u>제18조</u>(소요경비의 징수) ----- ----- -----.</p> <p>단, 법 <u>제14조</u>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u>제19조</u> ~ <u>제26조</u> (현행 <u>제17조</u>부터 <u>제24조</u>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에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에서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이상 반려견 한정, 고양이는 동물등록제도 미해당) 및 1년치 동물보험료 지원비용(반려묘만 해당, 반려견은 기 추진 중)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이상 반려견 한정) 및 1년치 동물보험료 지원비용(반려묘)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2018년 12월 기준 유기동물의 입양건수는 이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019년 소관부서 자료 기준, 2018년 유기견 입양 실적 1,500여마리)
※ 유기묘 입양의 경우 285마리로 추정(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참조)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 및 유기동물 입양시 지원단가도 비용추계기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비는, 시유재산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한다는 전제하에 2017년 ‘동물복지지원시설조성사업’ 예산 참조하여 산출(설계비 및 공사비 1,00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0천원)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운영비는, 2018-2019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예산 평균(연516,370천원) 및 20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지원예산(200,000천원)을 참조하여 산출(단,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재 직영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는 별도 계상되지 않은 운영비임)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으로 한정하고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추가비용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보험비 지원의 경우 반려견은 서울시 기추진 중이므로('19년 예산 420,000천원, 사업목표 2,000마리), 반려묘만 대상으로 비용산출하되 지원단가는 반려견 지원단가 참조(연210천원/마리)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4,789,610천원(연평균 957,92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기동물응급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	1,150,000	816,340	816,340	816,340	816,340	4,415,360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조례안 제15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5조)	59,850	59,850	59,850	59,850	59,850	299,250
	소계(b)	1,224,850	891,190	891,190	891,190	891,190	4,789,610
□ 총 비용(b-a)		1,224,850	891,190	891,190	891,190	891,190	4,789,61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이상 반려견 한정) 및 1년치 동물보험료 지원비용(반려묘)

2. 세부추계내역

- 2018년 12월 기준 유기동물의 입양건수는 이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019년 소관부서 자료 기준, 2018년 유기견 입양 실적 1,500여마리)
※ 유기묘의 경우 입양통계 찾기 어려워 반려견(84%)과 반려묘(16%)의 비율로 계산하여 285마리로 추정(2017년 서울서베이 결과 반려견 785,877마리, 반려묘 149,410마리)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비는, 시유재산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한다는 전제하에 2017년 ‘동물복지지원시설조성사업’ 예산 참조하여 산출(설계비 및 공사비 1,00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00천원)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운영비는, 2018-2019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예산 평균(연516,340천원) 및 20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지원예산(200,000천원)을 참조하여 산출(단,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재 직영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는 별도 계상되지 않은 운영비임)
 - 20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원예산 200,000천원 중 인건비는 81,50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동물병원 겸임 수의사 2명 및 행정직 1명과 10개월 운영으로 계획되었으므로 단순참조하여 인건비 3억으로 가정 (전임 수의사 2명, 일반직 6명)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추가비용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마리당 10천원)
※ 동물등록제도의 경우 현재는 반려묘 미시행(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나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504마리의 실적으로 참여 저조하였으며, 서울시는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3개구에서 실시한 실적이 총49마리임/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일정 미정)
- 유기동물 입양시 반려동물 보험비 지원의 경우 반려견은 서울시 기추진

중이므로('19년 예산 420,000천원/사업목표 2,000마리) 반려묘만 대상으로
비용산출하되 지원단가는 반려견 지원단가 참조(210천원/마리, 1년 지원 기준)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비
 - 설계비 및 공사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1,000,000천원 + 150,000천원
 - = 1,150,000천원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 = $\sum_{i=1}^4$ (연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4년)
 - 연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비
 - = 일반운영비 + 인건비
 - = 516,340천원 + 300,000천원
 - = 816,340천원
 - ※ 인건비는 수의사 1억(2명 가정), 일반직 2억 가정(6명 가정)
 - ※ 운영비는, 동물구조 지원 및 동물병원 등의 기능이 있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2017년 10월 설치)의 2018년(626,120천원), 2019년(406,560천원) 운영예산 평균인 연516,340천원으로 산출
- 유기동물 입양시 등록비용 = $\sum_{i=1}^5$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등록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등록비용
 - = 연간 입양 반려견 수 × 지원단가
 - = 1,500마리 × 10천원
 - = 15,000천원
-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비용 = $\sum_{i=1}^5$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 유기동물 입양시 보험비용
 - = 연간 입양 반려묘 수 × 지원단가
 - = 285마리 × 210천원
 - = 59,850천원